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가단51379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최의석

변 론 종 결 2023. 2. 14.

판 결 선 고 2023.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20. 9. 1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 10. 30. 접수 제497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소외 C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7. 2.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904674호,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 2017. 10. 12. “피고(= C)는 원고에게 15,846,882원 및 그 중 4,996,437원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망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C과 사이에 2남(장남 피고, 2남 E) 1녀(F)의 자녀를 두었다.

(2)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구주택은 1984. 10. 12.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배우자인 C 및 자녀들과 함께 직접 거주하여 왔는데, 2017. 5.경 구주택을 헐고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신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9. 19.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신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7. 10. 17.자로 채권최고액 144,000,000원(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망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2020. 9. 10.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C과 피고 및 E, F)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 10. 30. 접수

제49733호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2020. 12. 29.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자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망인과 C의 거주 형태

- (1) 망인은 1983. 3. 22.경부터 이 사건 구주택 및 신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는데, 장남인 피고(H생)는 군복무를 마친 1997년경부터 식당일, 운수업일 등을 하며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1998. 7. 소외 I과 혼인한 이후에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구주택 및 신주택에서 망인을 모시고 함께 살았다.
- (2) 망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다른 사람의 농지에 농사를 짓고 품삯을 받거나 부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여 온 관계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음주, 도박 등을 즐겨왔는데, 술을 마시기만 하면 배우자인 C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다.
- (3) 이에 C은 2000년경 가출을 하여 2003. 7.경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J에 거주하면서 건강식품 소매업체인 K를 운영하였고, 2016. 3.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L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M호에 거주하면서 줄곧 망인과 별거를 하여 왔다. 그러나, C은 망인이 찾아올 것을 염려하여 2017. 1. 13.경까지는 주민등록 주소도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지에 그대로 두었다가 2017. 1. 13.경 지인에게 부탁하여 주민등록 주소만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인의 주소지(서울 중랑구 N건물, O호)로 이전하였다가 지인이 위 주소지에서 퇴거하는 바람에 2019. 1. 18.자로 거주불명을 이유로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자, 2019. 2. 19. 주민등록 주소만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지로 등록하여 두었다.

라. C의 재산상태

망인의 사망 무렵부터 현재까지 C이 소유한 부동산은 전혀 없고, 신용카드 사용 등의 신용거래 기록도 전혀 없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상태

(1) 망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하여 오면서 1993. 4. 10.경 이 사건 토지 및 구주택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에서 돈을 빌렸다가 2012. 5. 3. 이 사건 토지 및 구주택에 채권최고액 15,4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고 G에서 돈을 빌려 그 무렵부터 G에 27,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망인은 술값이나 용돈이 필요하면 피고와 며느리인 I에게도 수시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I이 수시로 망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거나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2007. 5. 23.경부터 2013. 9. 9.까지 사이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만을 기준으로 하여도 I이 망인에게 지급하여 주고 회수하지 못한 돈의 액수가 61,519,200원에 이른다.

(3) 2017. 5.경부터 이 사건 구주택을 헐고 신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공사비로 129,014,220원이 들어갔는데, 위 건축비를 전부 피고가 부담하였다.

(4) 이 사건 신주택이 완공되자 망인은 2017. 10.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G에서 12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전액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7. 10. 30. 위 금원 중 일부금을 사용하여 기존에 망인이 G에 부담하고 있던 27,000,000원의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제1,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후 망인은 2020. 2. 24. G에서 추가로 3,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망인이 사망 당시 G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은 원금만 하여도 총 123,000,000원이 되었다.

(5)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151,318,150원(= 토지가액 77,270,500원 + 주택가액 74,047,650원)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3/9 지분)을 피고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3/9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태였으며, 피고는 C의 채무초과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망인의 재산상태와 피고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된다.

(2)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C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C은 적극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반면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만 하여도 18,469,771원[15,846,882원 + 2,613,889원(4,996,437원 × 연 15% × 2017. 3. 18.부터 2020. 9. 10.까지 1,273일/365일)]에 이르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단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망인의 장남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망인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 ② 망인의 배우자인 C은 망인의 폭언 및 폭행을 피해 2000년경 가출을 하였고, 망인의 다른 자녀들도 출가 또는 독립하여 망인과 함께 살지 않았음에도, 망인의 장남인 피고는 군복무 시절을 제외하고는 망인의 사망시까지 시종일관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심지어는 1998. 7. 결혼을 한 후에도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정한 직업 및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망인을 약 22년간 부양하였는데, 피고의 처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망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하여도 61,519,200원에 이른다.
- ③ 피고는 이 사건 신주택을 재건축하면서 그 공사비용 129,014,220원을 전부 부담하였는데, 망인 명의로 대출된 120,000,000원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그 비용으로 망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채무액 27,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신주택 재건축을 위하여 지출한 건축비 중에서도 36,014,220원(= 총 공사비용 129,014,220원 - 이 사건 신주택 담보 대출금 120,000,000원 + 기존 대출채무 변제액 27,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피담보채무액 123,000,000원을 모두 인수하였다.
- ⑤ 망인의 장례비용 3,854,100원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다.
- ⑥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G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123,000,000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담보가치도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여도 그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건축과 망인의 부양과정에서 투입한 금액, 피고가 망인의 기존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 ⑦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지출한

금원에 대하여 일부라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면, C뿐만 아니라 망인의 다른 자녀들까지도 모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라.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그 밖에 C의 채무초과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망인의 배우자인 C은 망인의 폭언과 폭행에 견디다 못해 망인을 피해 가출하여 약 20여년간 자녀들에게도 거주지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거의 만나지도 않은 채 살아 왔다.
- ②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부양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피고가 도맡아 하여 온 점,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담보가치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여도 그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건축과 망인의 부양과정에서 투입한 금액, 피고가 망인의 기존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의 소유로 하여 피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별지